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42
----------	-------

발의연월일 : 2026. 9. 22.

발 의 자 : 김원이 · 박홍배 · 윤준병
허성무 · 장철민 · 서삼석
김한규 · 서미화 · 조계원
임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생활권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생활·산업·교통·복지 등 광역행정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지원이나 특례 부여에 관한 연계 규정이 미흡하여, 광역생활권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를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보아 행정상·재정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역생활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제2장 제3절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광역생활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같은 항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본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시·군·구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4조의2(광역생활권에 대한 특</u> <u>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u> <u>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광역</u> <u>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u> <u>는 같은 항에 따라 추가로 특</u> <u>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u> <u>본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시</u> <u>·군·구에 대하여 행정적·재</u> <u>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